

2025

소방관계법규의 기초

소방공무원, 소방자격증

엠북 소방

공부혁명!
mbook.kr

- ✦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✦ 6개 법률 (영, 규칙 일부 포함) 정리
- ✦ 2시간 완성, 암기코드 제공
- ✦ 최근 법개정 내용 반영
- ✦ 2025년 시행 예정 내용 포함

도서명 : 소방관계법규의 기초

ISBN : 979-11-94286-09-7

발간일 : 2024-11-30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hanmail.net

정가 : 15,000원



소방관계법규의 기초

[목차]

- 제1편 소방기본법(p6)
- 제2편 화재조사법(p45)
- 제3편 화재예방법(p58)
- 제4편 소방시설법(p106)
- 제5편 소방시설공사업법(p157)
- 제6편 위험물안전관리법(p204)
- 제7편 비교·종합(p239~252)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노란색 형광펜은 암기방법 등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붉은색은 시행예정

[약어]

-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
- 부령은 행정안전부령
- 청장은 소방청장
- 중앙기관장은 (관계) 중앙행정기관의 장
- 국가등은 국가, 지자체
- 시도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
- 시도지사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,

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

- 소방관서는 소방청, 소방본부, 소방서

- 관서장은 소방관서장(소방청장, 소방본부장
또는 소방서장)

- 경찰은 경찰공무원

- 소방차는 소방자동차

-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

- 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사

- 기술사는 소방기술사

- 기술원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

- 안전원은 한국소방안전원

- 원장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장

- 대상물은 소방대상물 또는 대상물

- 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

- 비밀누설은 비밀을 (목적 외 용도로 사용 또는 제공하거나) 누설
- 거부등은 거부, 방해, 기피
- 전용구역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
- 면적단위는 제곱미터
- 5년5천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300 벌금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
- 500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(Copyright) 공부혁명! 엠북(mbook.kr)

제1편 소방기본법

[목차]

제1장 총칙

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

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

제4장 소방활동 등

제5장 화재의 조사

제6장 구조 및 구급

제7장 의용소방대

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/진흥 및 지원 등

제8장 한국소방안전원

제9장 보칙

제10장 벌칙

[약어]

위급상황은 화재, 재난/재해, 그 밖의 위급한

상황

대원은 소방대원

제1장 총칙

1~7조

1. 목적

- 화재 예방/경계/진압
- 위급상황 구조/구급
- 국민 보호
- 공공 안녕/질서 유지, 복리증진

2. 정의

가) 소방대상물은 건축물, 차량, 항구에 매어둔

선박, 선박 건조 구조물, 산림, 인공 구조물,
물건

나) 관계지역은 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이웃
지역

- 화재 예방, 경계, 진압, 구조, 구급 필요

다) 관계인은 대상물 **소**유자/**관**리자/**점**유자

라) 소방본부장(이하 **본부장**)은 시도 화재
예방, 경계, 진압, 조사, 구조, 구급 업무 담당
부서 장

마) 소방대는 화재 진압, 위급상황 구조/구급

- 소방공무원, **의무**소방원, **의용**소방대원

바) 소방대장(이하 **대장**)은 **소방본부장**(이하
본부장), **소방서장**(이하 **서장**) 등 위급

현장에서 소방대 지휘

3. 국가등의 책무

- 위급상황에서 국민보호 시책 수립/시행

4. 소방기관의 설치 등

가) 시도 소방기관

- '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'

나) 본부장/서장은 소재지 시도지사가
지휘/감독

- 청장은 필요시 지휘/감독 가능

다) 시도 소방업무 위해 시도지사 직속
소방본부 둠

- 소방업무는

· 화재 예방/경계/진압/조사

- 소방안전교육/홍보
- 위급상황 구조/구급

5. 소방공무원 배치

- 제주도 포함, 시도 소방기관과 소방본부에 지방국가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'지자체 소방공무원 정원 규정'에 따라 소방공무원 둘 수 있다

6. 119종합상황실(이하 상황실)

가) 관서장은 설치/운영 의무

- 구조/구급 필요 위급상황시
-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
- 정보 수집/분석, 판단/전파, 상황관리, 현장

지휘, 조정/통제

나) 소방본부(이하 본부) 상황실에는 경찰 둘
수 있다

7. 소방정보통신망

- 청장/시도지사는 상황실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축/운영 가능
- 회선 이중화 가능
- 이중화된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제공
요

8. 소방기술민원센터

- 가) 청장/본부장이 각각 설치/운영
- 센터장 포함 18명내

나) (기술민원) 업무

- 민원 종합 접수/처리

· 소방시설, 소방공사, 위험물 안전관리

법령해석 등

- 질의회신집/해설서 발간

- 정보시스템 운영/관리

- 현장확인

- 청장/본부장 지시 업무

다) 청장/본부장은 관계기관장에 공무원/직원

파견 요청

라) 이외는 소방청에 설치시 청장, 본부에

설치시 시도 규칙으로 정함

9. **소방박물관**은 청장이 부령으로,

-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조례로
- 설립/운영할 수 있고, 필요사항 정함

10.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종합계획)

가) 청장은 위급상황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5년마다 수립/시행, 자원 확보 노력 의무

- 중앙기관장과 협의 거쳐 10월31일까지 수립
- 중앙기관장, 시도지사에게 통보

나) 내용

- 서비스 질 향상
- 업무 체계 구축, 기술 연구/개발/보급
- 장비 구비

- 전문인력 양성
- 업무 기반조성
- (소방차 우선통행 등)교육/홍보
- 재난/재해 대응체계
- 장애인, 노인, 임산부, 영유아, 어린이 등 이동 어려운 자 대상 조치

다) 시도지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매년 종합계획 시행 세부계획을 12월31일까지 수립해 청장에 제출

- 청장은 보완/수정 요청

11. 소방의 날 등

가) 11월 9일 소방의 날

- 안전의식과 화재 경각심 제고, 안전문화 정착

- 청장/시도지사가 따로 행사 가능

나) 명예 대원

- 청장은 천재지변시 등 구조행위 한

의사상자나 소방발전 공로자 위촉 가능

제2장 소방장비 등

8~11조

1. 소방력

- 소방기관의 소방업무 수행 인력/장비

- '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'으로 기준 정함

- 시도지사는 소방력 확충 계획 수립/시행

의무

- 소방차 등 소방장비 분류, 표준화, 관리는 소방장비관리법

2. 국고보조

- 국가는 소방장비 구입 등 시도 소방업무 경비 일부 보조
- 기준보조율은 보조금법 시행령

3. 소방용수시설

가. 시도지사

- 소방용수시설(소화전, 급수탑, 저수조) 설치, 유지, 관리

-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초기 대응 필요 지역
중 화재경계지구나 시도지사 인정 지역에
(소방호스,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
연결해 화재를 진압하는) 비상소화장치 설치

나. 일반수도사업자

- 서장과 협의 후 소화전 설치
- 서장에 통지, 소화전 유지/관리

4. 소방업무의 응원

- 본부장/서장은 긴급시 이웃 본부장/서장에
응원 요청
- 사유없이 요청 거절못함
- 파견 대원은 요청 본부장/서장이 지휘

- 시도지사는 출동 대상지역, 규모, 경비 부담 등을 이웃 시도지사와 협의해 미리 규약으로 정해야 함

5. 소방력 동원

가) 청장은 시도 소방력으로 부족한 위급상황시, 국가적 소방활동 필요시 시도지사에 소방력 동원 요청

- 시도지사는 사유없이 거절못함

- 시도지사에 동원된 소방력 파견 요청 또는 직접 소방대 편성

나) 대원은 상황발생지 본부장/서장이 지휘

- 청장이 직접 편성시 청장이 지휘

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

화재예방법

제4장 소방활동 등

16~28조

1. 소방활동

- 관서장은 위급시 소방대를 신속히 출동시켜 화재진압, 구조/구급 등 소방활동 의무
- 누구든 사유없이 소방활동 방해 금지

2. 소방지원활동

가) 관서장은 공공 안녕질서 유지, 복리증진을 위해 소방지원활동 가능

- 산불 예방/진압
- 자연재해시 급수/배수, 제설
- 행사 근접대기
- 화재, 재난/재해 피해복구
- 군경 등 유관기관 훈련지원
- 소방시설 오작동 조치
- 방송제작/촬영 지원

나) 소방활동에 지장없는 범위내 소방지원활동

다) 요청 기관에 비용 부과 가능

- 금액, 부담방법은 협의 요

3. 생활안전활동

가) 관서장은 소방대를 출동시켜 신고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 의무

- 단, 화재/재난 등 위급상황 대응 제외
- 붕괴/낙하 우려 고드름, 나무, 위험 구조물 제거
- 위해동물, 벌 포획/퇴치
- 끼임, 고립 제거/구출
- 단전시 비상전원/조명 공급
- 방치시 급박해질 위험 예방

나) 누구든 사유없이 생활안전활동 방해못함

4. 소방차 보험

- 시도지사는 가입 의무

- 국가는 비용 일부 지원 가능

5.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

-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타인 사상시
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고의/중과실 없으면
형사책임 감면 가능

6. 소송지원

- 관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,
소방지원활동, 생활안전활동으로 민/형사
소송시 변호인 선임 등 지원 가능

7. 관서장의 소방교육/훈련

가) 대원 교육/훈련 의무

나) 영유아, 학생, 장애인 교육/훈련 가능

- 교장/원장 등과 협의 요

- 대학생 제외

다) 화재시 피난, 행동 방법 홍보 요

8. 소방안전교육사

가) 청장이 청장 실시 시험 합격자에 자격
부여

- 소방안전교육 기획, 진행, 분석, 평가, 교수

- 응시 수수료 납부

나) 부정행위시 시험 정지나 무효, 처분 2년간
응시못함

다) 배치

- 소방청 2, 소방본부 2, 소방서 1 이상
- 안전원: 본회 2, 시도지부 1 이상
- 기술원 2 이상

9. 한국119청소년단

- 소방안전 이해와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설립한다
- 법인임. 주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시 성립
- 국가등은 시설/장비 지원,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 경비 보조 가능
- 개인/법인/단체는 금전/재산 기부 가능
- 청소년단 (유사)명칭 사용못함